

IFRS 도입으로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화는 가능한가?

강 선 민*

< 국문초록 >

개별재무제표 중심의 공시제도는 투자자로 하여금 종속회사의 잠재적 부실여부 등을 간과하도록 하는 등 재무정보의 유용성을 현저하게 약화시켜 투자자 보호에 허점을 노출할 수 있다. 따라서 선진국들의 경우 거의 모든 상장기업들이 연결재무제표를 공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1974년 연결재무제표 제도 도입을 시작으로 연결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화하기 위한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 도입이 결정된 2007년말 현재 전체 상장기업의 50% 정도만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연결재무제표 공시비율은 우리보다 경제규모가 작은 다른 여러 국가들과 비교하더라도 낮은 수치이다. 이는 기존의 K-GAAP 하에서 피투자회사의 규모가 작거나(자산규모 100억 미만) 특수 조직형태인 경우(특수목적기업 등) 이들을 연결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한국은 연결범위 기준을 기업회계기준이 아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로서 규정하고 있다. 외감법 등은 모회사의 지분율이 30%를 넘고 최대주주인 경우 연결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종속회사가 외부감사대상기업(직전연도 자산규모 100억 이상)이 아닌 기업과 회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경우 연결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IFRS에서는 지분율기준에 의할 때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50%를 넘어야 연결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모회사의 지분율이 30%에서 50%인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계열사 중 상당수는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연결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기업규모 기준에 의한 우리나라 재계서열이 바뀔 수 있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한편 IFRS에서는 연결대상에 자산규모와 조직형태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연결대상의 자산규모 및 조직형태의 제한이 없어지게 됨에 따라 기존에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고 개별재무제표만을 작성·공시하던 많은 기업들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각 상장기업의 종속회사 및 관계회사의 지분율을 바탕으로 연결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하는 IFRS 도입이 우리나라 상장기업(금융업 제외)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비율을 얼마만큼 증가, 감소시킬지를 사전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2007년말 현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는 678개 상장기업 중 39개 기업은 지분율 50%가 넘는 종속회사나 관계회사를 하나도 거느리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므로 연결재무제표 작성 기업은 그만큼 감소하리라 추정된다. 반면에 2007년말 현재 기존 K-GAAP 하에서 개별재무제표만을 작성하고 있는 상장기업은 588개 기업 중 458개의 기업은 지분율이 50% 초과되는 1개 이상의 관계회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IFRS 도입 후 그만큼 연결재무제표 작성 기업이 증가하리라 추정된다. 종합하면, 2007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총 1,266 상장기업 중 기존 K-GAAP 하에서는 678개 기업(53.6%)만이 연결재무제표를 공시하고 있으나, IFRS 도입 후에는 그 수가 1,097 기업(86.7%)으로 대폭 증가하리라 예상된다. 즉 IFRS 도입 후 우리나라 상장기업 중 연결재무제표를 공시하는 비율은 국제적인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보여 진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IFRS 도입은 일거에 연결재무제표 공시비율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제고시킴으로써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화에 괄목할 만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IFRS 도입이 단순히 새로운 회계기준의 적용으로 개별 기업의 재무제표 수치의 변화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회계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일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IFRS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다른 여러 국가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주제어 : 국제회계기준, 연결재무제표, 종속회사, 지분율기준, 주재무제표

논문접수일: 2013.03.01. 논문수정일: 1차(06.11), 2차(06.22) 게재확정일: 2013.06.27.

*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조교수

Could th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be a Main Financial Reporting through IFRS Adoption in Korea?

Kang, Sun Min*

< Abstract >

While almost all of listed firms report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in developed countries such as U.S. and England, only about half of listed firms in Korea prepare for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as of the end of year 2007. Th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IFRS) requir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as the main financial statements. Thus, unless the number of firms reporting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significantly increases following the adoption of the IFRS in year 2011, it would be difficult for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to maintain the status of the main financial statements in our country.

Under the current accounting standards in Korea, a parent company should consolidate an investee company so long as its ownership exceeds 30%, when it is the major shareholder. In addition, the Korean accounting standards allow for exempting subsidiaries from consolidation, which are established for special purpose, ie, SPC, or small in firm size, ie, less than 10 billion Korean Won in total assets.

However, the so-called principle-based IFRS not only sticks to the theoretical 50% ownership rule, but does not allow for any exclusion of subsidiaries in consolidation. Thus two major changes are expected following the adoption of the IFRS in Korea. First, the scope of consolidation could shrink significantly, particularly for large business group firms, as their associated companies between 30% and 50% of ownership become ineligible for consolidation under the IFRS. Second, the number of firms reporting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would substantially increase as there are many new firms starting to consolidate their SPCs or subsidiaries with total assets less than 10 billion Korean Won under the IF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se two aspects empirically. This study expects to aid governmental supervisory agencies to set policies and regulations regarding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and to help related companies and information users to prepare in advance for the effect of IFRS adoption on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The results show that our IFRS adoption would increase the number of firms preparing for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substantially from the current 53.6% to 86.7% among all the listed firms at the end of year 2007.

The adoption of IFRS would accelerate our efforts to enhanc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as the main financial statements in accordance with global standards. Some concerns are that IFRS adoption could sharply increase the number of firms preparing for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with huge impact on the content of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at one time. Governmental supervisory agencies and related companies need to take proper actions in anticipation of these drastic changes. In particular, governmental supervisory agencies should be keen to make appropriate revisions in time to regulations based on financial statement numbers such as debt ratio, total assets, and sales revenue as there will be big changes in the main financial statements following IFRS adoption.

Key word : IFRS,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 subsidiaries, ownership, main financial statement

Received: 2013.03.01. Revisions: 1st(06.11), 2nd(06.22) Accepted: 2013.06.27.

* 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Chung-Ang University

I. 서 론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20세기 초반부터 연결재무제표(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작성이 일반화되어 자본시장에서 연결재무정보가 주된 공시정보로서 인식되어 왔다. 미국의 경우 개별재무제표(Un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를 일반목적 재무제표로 공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은 2000년 3월 결산 시부터 연결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¹⁾ 이와 같이 미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IFRS 도입과 관련 없이 이미 연결재무제표가 주요 공시재무제표로 지정되어 있으며 기업들의 연결재무제표 작성·공시 비율은 거의 100%에 달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1992년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를 도입한 이후 약 20년 정도의 시간이 경과하였으며, 1999년부터 한 줄로 된 연결(one-line consolidation)이라는 지분법을 도입하는 등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대해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개별재무제표가 주요 공시재무제표로 작성·공시되어 왔다. 개별재무제표 중심의 공시제도는 투자자가 종속회사의 잠재적 부실여부, 종속회사를 포함한 실질적인 경제적 실체의 정확한 재무구조 등을 파악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재무정보의 유용성을 현저하게 약화시켜 투자자 보호에 허점을 노출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연결재무제표를 개별재무제표보다 30일 늦게 공시도록 하여 왔다. 공시시기를 앞당기기 위하여 증권거래법을 개정하여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기업들은 2007년부터 연결재무제표를 개별재무제표와 동시에 공시하도록 하였으나 여전히 우리나라 기업들의 재무정보 공시는 개별재무제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²⁾ 실제로 IFRS 도입로드맵이 발표된 2007년말 현재

1) 권성수와 권수영(2006).

2) 재무제표의 주(主)와 부(附)의 개념은 학술적인 용어로서 이에 대한 법률적인 정의는 없다. 주재무제표가 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재무제표 정보가 의사결정의 유용성 측면에서 적시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외감법에 따르면 개별재무제표는 사업연도 종료후 3개월내에 연결재무제표는 사업연도 종료후 4개월내에 공시하도록 되어있어 연결재무제표는 개별재무제표에 비하여 1개월 늦게 공시되고 있다.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가 되기 위해서는 개별재무제표와 시차 없이 공시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3조의3에서는 자산 총액 2조원 이상 기업의 경우 2007 회계연도부터 연결재무제표를 개별재무제표와 함께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우선 대기기업의 경우 작성공시의 시차를 제거하였다. 둘째, 분·반기 보고서의 작성여부이다. 상장법인은 분·반기 개별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여야 하나 연결재무제표에 대해서는 연말에 한번 작성·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회계기준 도입과 함께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은 2011년, 2조원 미만 기업은 2013년부터 분·반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상법상 주주총회 승인 대상이 되는 법적 재무제표로 활용되는지 여부이다. 마지막으로 재무제표정보가 유용하기 위하여는 비교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비교가능하기 위하여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관련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여야 한다. IFRS 도입전에는 상장기업의 50% 정도만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어 연결재무제표를 이용하여 기업의 경영성과와 재무

우리나라 상장기업 중 절반 정도만이 개별재무제표에 보조적으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고 있다.

그러나 2011년부터 모든 상장기업에 대해 연결재무제표를 기본 공시재무제표로 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의 도입은 우리나라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화 노력에 상당한 탄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³⁾ 본 연구의 목적은 IFRS의 도입으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는 상장기업의 비율이 얼마나 상승하게 될지를 추산해 봄으로써 과연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화가 실질적으로 달성될 것인지를 예상해 보는 것이다.

연결재무제표는 2개 이상의 회사가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경우 지배회사가 작성하는 종속회사를 포함한 단일 경제적 실체인 연결실체의 재무제표를 의미한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지배기업은 하나 이상의 종속기업을 거느리고 있는 기업으로 연결의 주체이며,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의 지배를 받고 있는 기업으로 연결대상이다.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을 연결하는 고리는 지배력인데 이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는 지배회사의 지분율이다. 기존의 한국 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르면 모회사가 최대주주인 경우 그 지분율이 30%를 넘으면 해당 계열사는 연결대상이다. 하지만 IFRS에서는 모회사가 최대주주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실질지배력이 없는 한 지분율이 50%를 넘어야 해당 계열사가 연결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IFRS 하에서는 모회사가 지분율이 30%에서 50%사이에 있는 계열사에 대하여 실질지배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상당수가 연결에서 빠질 가능성이 존재한다.⁴⁾

한편 한국은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일정 규모 미만의 기업과 특수한 형태의 기업은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더라도 연결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IFRS는 종속회사의 규모와 형태에 대한 연결범위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조합, 특수목적회사(SPC) 등 특수한 형태의 기업도 연결대상에 포함된다. 그 결과 한국의 경우 종속회사의 자산규모나

상태를 비교하는 것이 어려웠다.

3) 한국은 2011년부터 상장기업에 대하여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로드맵을 발표하였다(2007.3.17.) 로드맵에서는 IFRS 도입배경과 기대효과로 연결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IFRS의 도입을 통하여 개별재무제표 중심의 공시체계를 연결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투자자 등에게 보다 유용한 정보 제공과 회계정보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4) 「30%대 지분계열사 연결대상 제외 외형축소로 재계 서열 크게 바뀔 수도, 2011년 의무화 「국제회계기준」 큰 파장 예고」, “상장사의 30~50%의 지분을 가진 계열사 중 상당수가 연결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다. ... 그 결과 덩치 큰 계열사들은 연결대상에서 빠지고 덩치가 작은 회사들은 연결대상에 추가돼 K-IFRS 체제에서의 연결재무제표는 ‘앙꼬 없는 찐빵’ 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국제회계기준 적용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례로 꼽히는 지주회사(주)LG의 경우 LG전자·LG화학·LG텔레콤·LG데이콤·LG생활건강·LG생명과학 등 주요 계열사 보유지분이 30~37% 수준이어서 향후 이들 계열사가 연결대상에서 빠지면 2007 회계연도에 54조 원 규모였던 연결기준 총자산이 대폭 줄어든다. 이처럼 연결기준 그룹 외형이 상당히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계 서열이나 위상 실추를 걱정하는 그룹들이 적잖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제 2009. 3. 22.),

기업형태에 따라 연결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기업들이 IFRS 적용으로 연결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의 수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IFRS 도입이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범위에 미칠 수 있는 상반된 영향으로 현재의 상장기업 과반수 정도의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업 비율이 확대, 축소될지는 관련 정책당국과 해당 기업,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에게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2011년부터 IFRS가 도입되면 우리나라 상장기업들은 종속회사 실적을 모두 합친 연결실적을 주재무제표로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일부 상장기업들의 경우 연결실적을 유리하게 보고하기 위해서 2007년 IFRS 도입에 대한 로드맵 발표 이후 계열회사의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맞교환하여 종속회사로 유지하거나 반대로 지분을 줄여 종속회사에서 제외하는 등 계열회사를 조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⁵⁾ 본 연구는 기업들이 계열회사의 지분 조정 등을 통해 연결범위를 의도적으로 변경시키는 행태가 일어나기 전의 자료를 이용하여 IFRS 도입으로 연결재무제표 작성비율이 얼마나 변동할 것인가를 예상해 본다. 본 연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비율의 예측 결과는 추후 IFRS에 의거한 연결재무제표가 발표된 이후의 자료를 이용한 실제 결과와 비교해 본다면 상당히 흥미로운 것이다. 만일 실제 결과가 본 연구의 예측 결과와 상당한 차이가 난다면 이는 우리나라의 많은 상장기업들이 IFRS 도입 이후 연결실적을 유리하게 보고하기 위해 계열회사의 지분 조정 등을 통해 의도적인 지배구조 변경 행태를 보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추후 기업의 이러한 변경 행태를 살펴보는데 기초를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는 우선 IFRS를 이미 도입하였거나 도입을 앞두고 있는 여러 다른 국가의 재무제표 공시 현황을 조사한다. 그 다음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의 연결재무제표의 공시비율이 IFRS 적용시 어떻게 달라지를 조사 분석한다. 즉 우리나라 상장기업에게 기존 한국 기업 회계기준(K-GAAP) 대신 IFRS를 적용할 경우 연결재무제표의 범위가 얼마나 확대되며 그 결과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이 되는 기업수가 어느 정도로 증가되는지를 분석한다. 그런 후 우리나라의 연결재무제표 공시비율을 다른 국가의 경우와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화가 IFRS 도입으로 과연 효과적으로 달성될 것인지를 평가해

5) 「IFRS 인수합병 부추기는 '숨은 접착제」, “우량 상장사들이 계열사 합병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올 들어 계열사 합병에 나선 기업은 제일모직, 진로, 현대그린푸드, CJ제일제당, 코에스엔아이 등이다. 이들 상장사의 인수합병 추진 배경은 대부분 모회사의 주력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지만 일부 기업은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을 의식해 연결재무제표의 건전성을 높이려는 이유도 있다. IFRS에 따르면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계열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분율 50% 이상인 기업에 한한다. 우량 계열사의 지분율이 여기에 미달하면 이를 연결재무제표에 반영하지 못한다. 반면 연결재무제표 대상에 포함되지만 실적 및 주가가 부진한 계열사에 대해서는 보유지분을 매각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지분율 50% 미만 우량계열사 '흡수'...지분 50% 이상 부실 계열사 정리...IFRS 도입과 함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부담이 모든 기업에 작용하는 것은 사실...최대한 긍정적인 지표를 만들기 위해 계열사 흡수합병 및 지분정리 등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경제 2011.4.19)

보고자 한다.

국가별 재무제표 공시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 미국과 유럽, 그리고 여러 아시아 국가들은 IFRS 도입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주요 공시재무제표로서 연결재무제표 작성·공시 비율이 거의 100%에 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가 아니라 부수적으로 작성되고 있으며, 실제로 2007년 상장제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비율은 53.6% 정도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IFRS 로드맵이 발표된 2007년말 기준 개별과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는 기업들의 관계·종속회사의 숫자와 지분율 등을 포함한 지배관계를 조사·분석한 결과, IFRS 적용시 연결재무제표 작성비율은 약 53.6%에서 86.7%까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IFRS 도입으로 한국의 연결재무제표 작성·공시 비중이 미국 등 서구 선진국들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이미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로서 자리 잡고 있는 일본 등 여러 아시아 국가들과는 비교할 때 거의 버금가는 수준까지 증가한다는 것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IFRS 도입이 단순히 회계기준 차이로 인하여 개별기업의 재무제표 금액의 변동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회계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연결재무제표가 우리나라의 주재무제표로서 정립되기 위한 지난 15년 이상의 오랜 기간의 노력이 IFRS 도입으로 일시에 달성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선진국의 경우와는 달리 IFRS 도입으로 인한 급격한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화는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함은 물론 기업들과 정보이용자들에게 큰 혼란을 야기하게 된다. 특히 연결대상 범위의 규정이 IFRS와 현재의 한국 기업회계기준상에 차이가 있어 더욱 그렇다. 한국 기업들은 IFRS라는 새로운 회계기준에 적응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연결을 중심으로 하는 회계시스템 구축 등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추가적인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중의 부담을 안게 된다. 이에 정책당국은 이러한 사회적인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IFRS 도입으로 인해 연결재무제표, 별도재무제표, 개별재무제표 등 여러 종류의 재무제표가 공시되게 되는데 각 재무제표의 목적이 무엇인지와 어떠한 기업에 이들이 요구되는지를 분명히 하며, 이들이 기존의 재무제표와 어떻게 비교가능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⁶⁾

6) 국제회계기준 도입과정에서 한국에서는 4가지의 재무제표가 존재하게 된다. 이는 연결재무제표(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별도재무제표(Separated financial statements), 개별재무제표(Un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그리고 결합재무제표(Combined financial statements)이다.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는 연결의 지배회사가 작성하는 재무제표이며, 개별재무제표는 종속회사가 없는 비지배회사가 작성하는 재무제표이다. 별도재무제표에는 자회사의 실적이 배제된 지배회사 자체의 당기순손익이 산출된다. 기업간 지배가 아닌 소유주를 중심으로 한 재벌(기업집단)에 대하여 작성의무가 있었던 결합재무제표는 IFRS 도입에 따라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으로 2011사업연도까지만 한시적으로 요구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다음 장에서는 주요 국가의 연결회계기준의 발전 과정과 한국의 연결제도 소개 및 관련 선행연구를 제시한다. 제3장은 국가별 연결재무제표 연결범위를 포함한 공시재무제표로서의 연결재무제표의 위상을 소개하고, 상장기업의 연결재무제표 공시현황을 제시한다. 제4장에서는 연결의 범위를 판단하는 지배력 기준에 대하여 기존의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K-GAAP)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구체적으로 비교 설명한다.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종속회사 및 관계회사의 지분율 및 지배관계 분석을 통하여 IFRS 적용시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기업의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확대될 수 있는지를 분석한 후 이를 다른 국가와 비교한다. 마지막 장은 본 연구의 요약 및 결론이다.

II. 연결회계기준의 발전 및 선행연구

2.1 연결회계기준의 발전

2.1.1 국제회계기준(IFRS)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 IASC)는 1974년 12월 11일에 공개초안 제3호(ED 3)로 ‘연결재무제표와 지분법 회계(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and the Equity of Accounting)’를 발표하고, 2년 후 1976년 6월 IAS No.3 ‘연결재무제표(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를 공표한 바 있다. 이어 1989년 4월에 IAS 27과 IAS 28로 ‘연결재무제표와 종속회사에 대한 투자회계(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and Accounting for Investments in Subsidiaries)’와 ‘관련회사에 대한 투자회계(Accounting for Investments in Associates)’를 공표하고 199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부터 이를 적용하였다. IAS 31 ‘조인트벤처의 지분에 대한 재무보고(Financial Reporting of Interest in Joint Ventures)’와 IAS 22 ‘기업결합 회계처리(Accounting for Business Combination)’도 모두 넓은 의미에서 IAS의 연결회계기준에 포함된다.⁷⁾

2001년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C)는 조직 개편과 함께 IASB(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로 개명하면서 동시에 국제회계기준서의 명칭도 IAS에서 IFRS로 바꾸었다. 이후 글로벌 경제위기 발생으로 2008년 12월 IASB는 G20의 금융시장 개혁을 위한 액션플랜 과제를 신속히 다루기 위한 일환으로 ED 10 ‘연결재무제표(Consolidated

7) 채규학·채창순(1992) 일부 요약.

Financial Statements)’의 공개초안을 발표하였다. ED 10은 2003년부터 논의되어 온 특수 목적기업(SPE)을 포함한 연결판단기준과 함께 IAS 27(Consolidated and Separate Financial Statements)과 SIC Interpretation 12(Consolidation-Special Purpose Entities)에 의한 회계정보가 보고기업의 구성을 이해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연결하지 않은 SPE에 관한 내용 및 관련 위험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후 2011년 5월 12일에 IASB는 연결범위 판단기준을 지배모형과 위험효익모형(IAS 27)에서 지배모형(IFRS 10)으로 단일화하고 지배력에 대한 정의도 정교화한 IFRS 10의 제·개정 내용을 발표하였다.⁸⁾ 이와 관련하여 IASB는 기존의 IAS 27가 이미 실질지배력을 언급하고 있으나 다만 실무지침이 부족하였으므로 새로 제정된 IFRS 10에서는 이를 명시화하고 실무지침을 다양하게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IAS 27을 엄격하게 해석한다면 지분을 50% 미만인 경우 피투자기업을 연결범위에 포함시키기 어렵다. 그러나 IFRS 10에 따르면 이러한 피투자기업에 대해 실질지배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

8) 2011년 발표된 연결 관련 IFRS 제·개정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기존에 각각 설명되어 있는 별도재무제표 관련 규정 (IAS 27, IAS 28, IAS 31)을 통합함으로써 IAS 27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를 IAS 27 ‘별도재무제표’로 개정하였고, IAS 27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에 SPE와 관련한 SIC 12의 내용과 함께 연결재무제표 관련 규정과 지배력 판단지침을 추가하여 IFRS 10 ‘연결재무제표’ 제정하였다. 또한 관계기업 투자와 조인트벤처 투자에 대한 회계처리는 지분법으로 평가(비례연결법 폐지)하므로 기준서 제목 개정 및 관련 내용 일부 개정하여 IAS 28 ‘관계기업 투자’를 IAS 28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 투자’로 개정하였다. IAS 31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은 IFRS 11 ‘공동약정(Joint Arrangements)’으로 개정하였으며, IAS 27, IAS 28, IAS 31의 공시 관련 내용에 주식공시 및 SPE에 대한 공시를 추가하여 IFRS 12 ‘다른 기업에 대한 지분 공시’를 제정하였다.

현행	제·개정
IAS 27 Consolidated & Seperate F/S	IAS 27 Seperate F/S
SIC 12 Consolidation-SPE	IFRS 10 Consolidated F/S
IAS 28 Investments in Associates	IAS 28 Investments in Associates & Joint Ventures
IAS 31 Interest in Joint Ventures SIC 13 Jointly Controlled Entities-Non Monetary Contributions by Venturers	IFRS 11 Joint Arrangements
	IFRS 12 Disclosure of Interests in Other Entities

한편 IFRS 10 'Consolidated F/S'에서는 3가지의 요소 즉, ① 피투자자에 대한 힘(power over the investee), ②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발생하는 변동 수익에 노출되거나 권리가 있는 경우 (exposure, or rights, to variable returns from involvement with the investee), ③ 투자자의 수익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피투자자에 대해 자신의 힘을 이용하기 위한 능력(the ability to use power over the investee to affect the amount of the investor's returns)을 충족해야만 지배가 성립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인바 이로 인해 연결범위의 변화가 예상된다.

한편 ED 10의 내용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27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ISA 27, Consolidated and Separate Financial Statements)’ 및 제2012호 ‘연결: 특수목적기업(SIC Interpretation 12, Consolidation-Special Purpose Entities)’과 관련된 것으로, 기준서 시행일은 201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제·개정된 IFRS 10 등의 연결 기준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추가 반영하여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이를 적용할 예정이다.

2.1.2 한국

한국에서 연결재무제표는 상장법인 회계규정과 상장법인 재무제표규칙 등에서 197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상장법인에 한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개별재무제표에 부속표로 첨부하게 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어 실효가 없다가 1992년 증권거래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상장법인에 대하여 연결재무제표 작성 및 외부감사를 의무화하면서 연결재무제표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에서는 상법 제448조 제1항 규정을 준용하여 개별재무제표(un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를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부터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연결재무제표는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개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의 공시시기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규정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상법상 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를 결정하는 주주명부 폐쇄일이 주주총회 전 3개월 이내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외부감사 대상기업도 공개기업과 마찬가지로 개별재무제표가 연결재무제표보다 한 달 정도 빨리 공시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한 달 정도 늦게 공시되는 연결재무제표보다 우선적으로 공시되는 개별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로 이용되며, 연결재무제표는 보충적 재무제표로 사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증권거래법상 사업보고서 제도 역시 개별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연결재무제표는 보충적 재무제표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즉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3조의3(사업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은 개별회사를 중심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연결재무제표 및 그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은 당해법인의 사업보고서 중 재무에 관한 사항에 포함하여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연결재무제표의 공시시기를 규정함에 있어서도 해당 종속회사의 결산지연 등의 사

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보고서 제출 후 30일 이내에 연결재무제표 및 그에 대한 공인회계사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별재무제표 위주의 사업보고서 공시제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회사들은 개별재무제표가 작성·공시되고 난 후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이 경과한 후에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표하여 왔다⁹⁾.

재무제표 공시시점과 동일한 맥락에서 개별재무제표의 경우 증권거래법 규정에 따라 주권 및 코스닥 상장법인은 분·반기보고서를 작성·공표하도록 되어 있다. 즉, 새로운 회계정보가 3개월 단위로 제공되어 정보이용자들에게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반면 연결재무제표는 분·반기재무제표 작성의무가 없으므로 1년에 한 번 작성되므로 적시에 유용한 회계정보를 제공하는 데 부적합하다.

재무회계개념체계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에 따르면 회계정보의 가장 중요한 질적 특성은 목적적합성(relevance)과 신뢰성(reliability)이다. 이러한 목적적합성은 회계정보가 의사결정 시점에 이용 가능하도록 적시에 제공될 때 유효하게 확보될 수 있다. 즉 회계정보가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시에 제공되어야 한다. 적시성(timeliness) 있는 정보라 하여 반드시 목적적합성을 갖는 것은 아니나, 적시에 제공되지 않는 정보는 주어진 의사결정에 이용할 수 없으므로 목적적합성을 상실하게 된다. 이와 같이 이론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연말기준으로 작성되는 연결재무제표는 개별재무제표에 비하여 30일 늦게 작성·공표될 뿐 아니라, 연결을 기반으로 하는 분·반기보고서가 작성·공표되지 않고 있으므로 목적적합한 정보의 특성을 가지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상장법인 총 시가총액의 40% 이상을 외국인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현실에서 회계제도의 선진화를 위하여 2005년 3월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3조의3을 개정하여 사업보고서 기재방법을 개선하였다. 이에 따르면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의무가 있는 법인의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주된 재무제표로 하여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종속회사를 포함한 재무정보를 주되게 공시하게 하는 이러한 조치는 정보의 표현충실(faithful representation)과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인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경과 후 30일까지 연결재무제표의 제출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밖에 회계선진화의 전사적인 조치로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모든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IFRS는 기본적으로 연결재무제표 체계하의 회계기준이기 때문에 한국의 기존 회계기준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이제까지 한국에서는 연

9) 실제로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들의 2004회계연도 개별감사보고서와 연결감사보고서의 각각의 공시일은 다음과 같이 한 달 정도의 차이가 있다. 삼성전자(3.11/4.29) 포스코(3.11/4.14) 국민은행(3.21/4.6) 현대자동차(3.18/4.30) SK텔레콤(3.11/4.30)

결재무제표가 개별재무제표의 정보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온 반면, 미국과 영국 등의 국가들은 반대로 연결재무제표가 주된 재무제표이며 개별재무제표는 그 보충정보자료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개별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로 작성·공시하여 왔던 한국의 기업들에게는 IFRS 도입이 새로운 회계기준 적용 이상의 의미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개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의 목적과 기능에는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정보내용의 범위와 질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2.2 선행연구

연말기준으로 작성되는 연결재무제표가 개별재무제표에 비하여 30일 늦게 작성·공표됨에도 불구하고 한국 내에서는 개별재무제표와 비교한 연결재무제표의 정보유용성을 검증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어 왔다.

정규언과 김정원(1994)은 연결이익정보를 전기 연결이익과의 차이로 측정한 경우 연결이익의 추가적 정보가치를 검증하지 못하였으나, 연결이익과 개별이익의 차이에 따른 더미변수로 정의한 경우에는 연결이익이 개별이익에 비하여 추가적인 정보가치를 가진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전성빈(1994)은 1992년 증권거래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감사받은 연결재무제표를 대상으로 연결정보의 유용성을 입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연결이익정보와 연결매출정보는 4월말 전후의 기간 동안은 누적 초과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결감사보고서 일자 전후를 검증기간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연결이익정보만 일별 초과수익률과 유의적으로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외부감사가 의무화된 연결재무제표의 유용성에 대해 황인태(1995)는 연결재무제표 공시를 전후하여 주식거래량의 유의한 증가를 발견하였다. 종합하면, 이러한 연구들은 모두 연결재무제표의 정보유용성을 지지하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앞선 연구들이 연결재무제표의 정보유용성에 초점을 둔 것이라면 다음의 연구들은 제도적 측면에서 한국의 연결재무제표 관련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우선 황인태와 강선민(2006)은 연결공시제도의 선진화 측면에서 관련 규정의 정비와 제도개선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연결재무제표 작성 기업에 대한 종속회사 수, 지분율 등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개별재무제표에서 연결재무제표로 전환 시 어느 정도의 기업규모 및 재무구조의 변화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연결재무제표의 공시를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내로 개선할 것과 분·반기 연결보고서의 도입, 연결기반 재무보고서의 작성기업에 대한 개별재무제표의 면제, 기업의 부담을 고려한 연결공시제도의 단계적 도입 등을 주장하고 있다.

김종대 외(2007)는 연결공시제도의 도입에 따른 관련 규정 및 제도의 정비방안을 제시

하기 위하여 기업의 회계담당자, 분석가, 회계사, 교수 등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공시제도 도입 시 기업의 이중부담을 고려하여 개별 재무제표 공시의 면제와 기업집단 결합재무제표 폐지의 필요성 등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한편, 권성수와 권수영(2006)은 문헌검토와 국제회계기준 등의 관련기준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기존 한국의 연결기준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화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한국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작성절차 등 회계처리는 회계기준(연결재무제표준칙)에서 정하고 있지만, 연결범위는 회계기준이 아닌 외감법에 규정되어 있다 보니, 금융감독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등 여러 정부부처의 개입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연결범위와 같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위한 일반목적의 재무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은 회계기준에서 정하는 것이 타당함을 주장하였다. 즉 경제적 실질을 잘 반영한 연결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화하기 위해서는 연결범위는 실질에 따르도록 하되 국제적 추세에 맞춰 회계기준에서 제정하는 것이 일반목적의 재무정보 유용성에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는 각국의 국제회계기준 도입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이슈 중에서도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한국과 같이 특수한 회계환경과 기업환경을 갖는 경우에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기업의 공시재무제표 또는 회계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III. 연결재무제표 공시현황

본 장은 각국의 연결회계제도와 이와 관련한 연결범위를 나타낸다. <표 1>에서 보듯이 많은 선진 국가들이 연결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유럽에 속해 있는 국가들의 경우에는 이미 2005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연결재무제표의 위상, 연결의 범위, 연결재무제표의 회계감사 등에 있어 국가간 차이점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의 경우 연결재무제표는 1881년 Chicago and Northwestern Railway Corporation이 작성한 것이 효시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현대적인 양식의 연결재무제표는 1902년 U.S. Steel Corporation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러한 연결재무제표는 1917년 소득세에 대한 연결신고서가 제도화되면서 1920년대에 정착하기 시작하여, 1930년대 초에 실무적으로 일반화되었다. 1929년 주식시장의 폭락으로 말미암아 1933년 증권법과 1934년에 증권거래법이 제정되고, 이에 의해 SEC는 1940년에 Regulation S-X를 공표하여 공식적으로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을 의무화하였다. 그러나 연결재무제표는 여전히 개별재무제표에 종속적

인 위치에 있었다. 연결재무제표가 주요 재무제표로 부각된 것은 미국공인회계사회(AICPA)가 1959년에 ARB No. 51을 발표하면서부터이다. ARB No. 51은 기본적으로 지배회사의 주주와 채권자의 경제적 효익을 위하여 지배회사와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종속회사를 하나의 경제적 단일체라는 가정하에 그 회사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나타내기 위하여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을 요구하였다. 1987년에는 미국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가 재무회계기준서 No. 94를 발표하여 연결대상범위를 보다 확대하였다. 1995년에는 실질지배력 기준의 연결재무제표를 골자로 하는 1차 공개초안이 공표된 바 있으며, 1999년에는 연결정책에 대하여 2차 공개초안이 발표되었다. FASB는 현재 이러한 공개초안에 대한 개정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표 1〉 국가별 연결재무제표

국가	연결재무제표 위상	연결 범위	연결재무제표 회계감사
IFRS	일반적으로 주재무제표로 작성요구되나 예외 인정	일반적으로 50% 초과지분 비율, 이사회 지배력 및 재무와 영업정책의 지배력 기준	의무화
미국	증권거래소에 제출하는 주재무제표임	일반적으로 50% 초과지분 비율과 경제적 지배력기준	의무화
영국	증권거래소에 제출하는 주재무제표임	일반적으로 50% 초과지분 비율, 실질적인 단일의사결정체 여부	의무화
독일	증권거래소에 제출되는 주재무제표이나 상법상 요구되지 않음	일반적으로 50% 초과지분 비율, 실질적인 단일의사결정체 여부	의무화
프랑스	증권거래소에 제출되는 주재무제표이나 상법상 요구되지 않음	일반적으로 50% 초과지분 비율	의무화
이탈리아	증권거래소에 제출되는 주재무제표이나 상법상 요구되지 않음	일반적으로 50% 초과지분 비율	의무 아니나 자발적인 경우 많음
네덜란드	증권거래소에 제출하는 주재무제표임	일반적으로 50% 초과지분 비율, 경영진과 이사회 지배력 기준	의무화
캐나다	증권거래소에 제출하는 주재무제표임	일반적으로 50% 초과지분 비율(경제적 지배력 기준 적용 고려 중)	의무화
호주	증권거래소에 제출하는 주재무제표임	일반적으로 50% 초과지분 비율(경제적 지배력 기준으로의 전환 예상)	의무화
일본	증권거래소에 제출하는 주재무제표임	일반적으로 50% 초과지분비율, 실질 지배력 기준	의무화

자료> 채규학과 최창순(1992)의 자료를 인용하였으나 국가에 따라서는 최근의 기준을 반영하여 수정·작성하였음.

일본은 세계 제2차 대전 후 설립된 기업회계심의회(대장성)의 미래 프로젝트 주제의 하나로 연결재무제표를 채택한 바 있으며, 자회사를 통한 이익조작으로 인한 연쇄도산사태가 사회적 문제가 됨에 따라 1967년 기업회계심의회가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의견서」를 공표하였으나 기업과 감사업체의 반대로 도입이 유보되었다. 그러나 기업들이 자발적인 필요에 의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사례가 증가하였다. 일례로 미국 등의 외국증권시장에서 자금조달을 추진하기 위하여 1961년 소니(SONY)부터 시작하여 1975년까지 약 40개의 회사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바 있다. 때마침 기업집단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의 파악을 위한 연결회계의 필요성을 인정한 증권거래심의회가 1970년에 제출한 「기업내용공시제도 등의 정비개선에 관하여」란 보고서가 계기가 되어 1975년에 기업회계심의회가 「연결재무제표의 제도화에 관한 의견서」를 공표하였으며 그에 따라 1977년 결산부터 연결재무제표의 공시가 의무화되었다(김종대 외 2007). 즉, 일본에서는 1977년 4월부터 증권거래법에 의해 유가증권신고서 또는 유가증권보고서를 제출하는 회사에게 연결재무제표 작성 및 공인회계사 감사를 의무화하였다(송인만과 김문철 2005).

일본의 경우에는 2000년 3월 결산기부터 최초로 적용했던 신연결회계제도로 우선 공개기업만을 대상으로 연결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화했다. 그러나 신연결회계제도 적용이 법적으로 의무화 된 것은 공개기업뿐이지만 연결기업 그룹 내의 여타 기업도 당연히 회계정책을 연결 주체와 통일시켜야 했다. 따라서 많은 비공개 기업들도 연결결산 일정을 크게 앞당겨야 했으며, 대기업에게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이연법인세 회계 등을 연결대상 중소기업도 적용해야 하는 등 회계기준 변경이 불가피했다. 연결범위도 모회사가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던 종래의 ‘지분율기준’에서 ‘실질 지배력기준’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기업들의 부담이 상당하였다.¹⁰⁾ 이러한 상황은 현재 IFRS도입을 준비하고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연결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화 하면서 겪고 있는 상황과 비슷할 것으로 보여 진다.

실제로 각국의 상장기업들의 연결재무제표 공시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2008년말 현재의 Osiris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유럽 국가들과 북미 국가뿐만 아니라 아시아 여러 국가들의 재무제표 공시현황을 분석하였다. <표 2>는 각국의 상장기업들의 연결재무제표 공

10) 매일ECONOMY. 2004.07.29. 일본의 연결재무제표: “일본에서 신연결회계제도가 도입된 지 올해로 5년째다. 2004년 3월말 현재 동 경증권거래소에 상장된 3월말 결산회사(일본은 3월말 결산회사가 대부분임) 중 연결결산을 발표하는 회사는 1599개사에 이르며, 동경증권거래소 상장부 통계에 따르면 이들 회사들이 연결결산자료를 발표하기까지는 평균 44.8일이 소요 된다고 한다. 다시 말해, 3월말 결산회사 대부분이 5월 중순경에 연결결산을 공표한다는 얘기다. 일본에서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로 도입된 2000년 3월기에는 평균적으로 53.9일 소요됐으나 이후 매년 단축된 결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된 모습이 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무적으로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감사 받은 연결재무제표를 제출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적시성 있는 정보의 공시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시현황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표 2> 각국의 재무제표 공시현황

구분	국가명 (가나다순)	연결 F/S		연결 & 개별 F/S		개별 F/S		합계	
북미	미국	8246	(98.2%)	9	(0.1%)	146	(1.7%)	8401	(100.0%)
	캐나다	2378	(100.0%)	1	(0.0%)	0	(0.0%)	2379	(100.0%)
아시아	대만	149	(10.1%)	1168	(78.9%)	163	(11.0%)	1480	(100.0%)
	말레이시아	959	(97.8%)	21	(2.1%)	1	(0.1%)	981	(100.0%)
	싱가포르	573	(97.8%)	13	(2.2%)	0	(0.0%)	586	(100.0%)
	인도	2656	(87.3%)	318	(10.5%)	68	(2.2%)	3042	(100.0%)
	인도네시아	323	(91.2%)	12	(3.4%)	19	(5.4%)	354	(100.0%)
	일본	3408	(89.0%)	200	(5.2%)	223	(5.8%)	3831	(100.0%)
	태국	479	(92.3%)	20	(3.9%)	20	(3.9%)	519	(100.0%)
	한국	4	(0.2%)	791	(46.5%)	907	(53.3%)	1702	(100.0%)
	호주	1221	(95.8%)	38	(3.0%)	15	(1.2%)	1274	(100.0%)
유럽	홍콩	204	(94.9%)	11	(5.1%)	0	(0.0%)	215	(100.0%)
	그리스	269	(93.7%)	14	(4.9%)	4	(1.4%)	287	(100.0%)
	네덜란드	163	(94.8%)	7	(4.1%)	2	(1.2%)	172	(100.0%)
	덴마크	149	(77.2%)	16	(8.3%)	28	(14.5%)	193	(100.0%)
	독일	795	(89.9%)	45	(5.1%)	44	(5.0%)	884	(100.0%)
	라트비아	30	(88.2%)	4	(11.8%)	0	(0.0%)	34	(100.0%)
	룩셈부르크	39	(97.5%)	1	(2.5%)	0	(0.0%)	40	(100.0%)
	리투아니아	33	(78.6%)	7	(16.7%)	2	(4.8%)	42	(100.0%)
	몰타	3	(37.5%)	4	(50.0%)	1	(12.5%)	8	(100.0%)
	벨기에	153	(97.5%)	2	(1.3%)	2	(1.3%)	157	(100.0%)
	사이프러스	47	(94.0%)	1	(2.0%)	2	(4.0%)	50	(100.0%)
	스웨덴	401	(98.0%)	8	(2.0%)	0	(0.0%)	409	(100.0%)
	스페인	129	(70.9%)	25	(13.7%)	28	(15.4%)	182	(100.0%)
	슬로바키아	11	(64.7%)	2	(11.8%)	4	(23.5%)	17	(100.0%)
	슬로베니아	9	(75.0%)	2	(16.7%)	1	(8.3%)	12	(100.0%)
	아일랜드	73	(94.8%)	4	(5.2%)	0	(0.0%)	77	(100.0%)
	에스토니아	17	(100.0%)	0	(0.0%)	0	(0.0%)	17	(100.0%)
	영국	2126	(97.6%)	29	(1.3%)	23	(1.1%)	2178	(100.0%)
	오스트리아	94	(95.9%)	4	(4.1%)	0	(0.0%)	98	(100.0%)
	이탈리아	243	(83.5%)	31	(10.7%)	17	(5.8%)	291	(100.0%)
	체코	12	(60.0%)	5	(25.0%)	3	(15.0%)	20	(100.0%)
	포르투갈	47	(74.6%)	4	(6.3%)	12	(19.0%)	63	(100.0%)
	폴란드	60	(72.3%)	15	(18.1%)	8	(9.6%)	83	(100.0%)
	프랑스	737	(87.4%)	71	(8.4%)	35	(4.2%)	843	(100.0%)
	핀란드	120	(96.0%)	5	(4.0%)	0	(0.0%)	125	(100.0%)
	헝가리	20	(90.9%)	1	(4.5%)	1	(4.5%)	22	(100.0%)

1) 자료 : Osiris 2008.12. 기준

유럽과 북미의 선진 국가들과 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경우 연결재무제표만을 공시하는 기업이 전체 상장기업 중 80% 이상을 상회하고 있다. 다만, 대만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만의 공시비율이 10.1%이지만 대신 연결재무제표와 개별재무제표를 동시에 공시하고 있는 비율이 78.9%나 된다. 개별재무제표만을 공시하는 비율은 11.0%에 불과하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연결재무제표가 주요 회계정보의 공시수단인 동시에 주재무제표로 그 위상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상장기업의 재무제표 공시현황이 상당히 다르다. 2008년 현재 1,702개 상장기업 중 한국의 상장기업들 중 연결재무제표만을 공시하는 기업은 거의 없으며(0.2%), 개별재무제표만을 공시하고 있는 기업의 비율이 53.3%로 과반수가 넘는다. 나머지 46.5%는 연결재무제표와 개별재무제표를 동시에 공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교에서 나타나듯이 우리나라는 상장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태이며, 이에 국제적인 추세에 맞추기 위해 연결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화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황인태와 강선민(2006)은 선진국에 비하여 작성·공표하는 재무제표 종류가 많아 기업측에서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개별재무제표를 제외한 연결재무제표만을 공시하는 선진국 수준으로 부담을 경감하는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한국의 기존 연결기준과 2011년부터 한국 상장기업에게 적용되는 국제회계기준상의 연결기준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연결재무제표 공시수준이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차이가 나는 원인을 파악해 본다.

III. 지배력 기준: K-IFRS와 K-GAAP 비교

3.1 K-IFRS와 K-GAAP 비교

연결재무제표는 단일 경제적 실체인 연결실체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자본변동 및 현금흐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배회사가 작성하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국제회계기준서에 따르면 지배기업은 종속기업 투자를 연결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연결재무제표는 둘 이상의 회사가 지배·종속의 관계에 있는 경우 지배회사가 작성하는 단일 경제적 실체의 재무제표로 표시되는 연결실체의 재무제표를 말한다. 따라서 우선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를 정하기 위해서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정의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배기업은 하나 이상의 종속기업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며 반면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의 지배를 받고 있는 기업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을 연결하

는 고리는 지배력이다.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이러한 지배력을 경제활동에서 효익을 얻기 위하여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회계기준에서는 지배력을 지분율기준과 실질지배력기준 두 가지를 사용하여 정의하고 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K-IFRS) 제1027호(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와 기존 기업회계기준서(K-GAAP) 제25호(연결재무제표)에서 지배력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지분율기준과 실질지배력기준 두 가지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3.1.1 지분율기준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제1027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지배기업이 직접으로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기업 의결권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이 그 기업을 지배한다고 본다. 다만 그러한 소유권이 지배력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기존 기업회계기준서 제25호 : 연결재무제표

기업회계기준서 제25호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자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지분율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식회사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둘째, 주식회사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당해 다른 회사의 최대출자자인 경우. 그리고 셋째,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종속회사의 종속회사를 포함한다)가 합하거나, 종속회사와 종속회사가 합하여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당해 다른 회사의 최대출자자인 경우.

(3) 차이

K-GAAP에서는 연결의 기준이 대주주일 경우 30% 지배력이다. 그러나 IFRS(또는 K-IFRS)에서는 무조건 50% 지배력이다. 따라서 지배회사가 30%와 50% 사이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관계회사는 연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IFRS에서 이러한 관계회사가 연결에서 제외된다 하더라도 지배회사는 관계회사에 대해 연결의 개념에 입각한 지분법을 이용하여 회계처리해야 하므로 (재무제표상) 순자산과 순이익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3.1.2 실질지배력기준

IFRS에서는 실질지배력기준의 예로 4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IFRS에 열거되어 있는 실질지배력기준과 현행 K-GAAP상 실질지배력기준의 예를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다.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제1027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 ① 다른 투자자와의 약정으로 과반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 ② 법규나 약정에 따라 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 ③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가 기업을 지배한다면, 그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의 과반수를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 ④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가 기업을 지배한다면, 그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의 의사결정에서 과반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2) 기존 기업회계기준서 제25호 : 연결재무제표

- ① 주식회사가 계약에 의하여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
- ② 기타 주식회사가 다른 회사의 재무 또는 영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외감규정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는 주식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인 경우 등 법률 또는 계약 등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재무 또는 영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③ 주식회사가 계약 등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이사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의 구성원의 과반수이상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
- ④ 주식회사가 계약 등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과반수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

(3) 차이

위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IFRS상 실질지배력기준과 현행 K-GAAP상 실질지배력기준은 대동소이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IFRS도입시 실질지배력기준에 의하여 종속회사

범위에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3.1.3 종속회사 규모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제1027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피투자기업의 자산규모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지배기업이 피투자기업에 지배력이 있으면 해당 피투자기업은 연결대상 종속기업이 된다.

(2) 기존 기업회계기준서 제25호 : 연결재무제표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범위를 외감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외감법 시행령에 따르면 외부감사대상 해당여부에 따라 외감대상 회사에 한하여 연결대상 종속회사에 포함된다.

(3) 차이

IFRS에서는 K-GAAP과는 달리 2008년 기준으로 볼 때 지배회사가 자산총액 7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 지분을 50%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현재에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포함시킬 필요가 없었으나 IFRS하에서는 연결재무제표작성시 종속회사에 포함하여야 하므로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종속회사 수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현재 70억 미만 주식회사만을 종속회사로 가지고 있어 현행 규정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던 회사들이 IFRS도입으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3.1.4 종속회사 종류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제1027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투자자가 벤처캐피털, 뮤추얼펀드, 단위신탁 또는 이와 유사한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종속기업을 연결대상에서 제외하지 아니한다. 즉 종속기업이 단순히 벤처캐피털조직, 뮤추얼펀드, 단위신탁이나 이와 유사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 종속기업을 연결에서 제외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IASB는 지배하는 기업의 성격에 근거하여 종속기업이 연결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다. 연결은 피투자기업을 지배할 수 있는 지배기업의 능력에 근거하는데, 이는 지배하는 능력(즉, 능력은 존재하나 행사되지 않는 것)과 실제 지배(즉, 능력이 행사되는 것)를 모두 포함한다.

(2) 기존 기업회계기준서 제25호 : 연결재무제표

외감법시행령 제1조의3에 따르면 종속회사는 ‘회사’로 규정되어 있어 종속회사의 법적 형태가 상법에서 정의하는 ‘회사(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¹¹⁾.

(3) 차이

기존 규정하에서는 회사의 형태가 아닌 벤처캐피털, 뮤추얼펀드 또는 단위신탁이나 조합, 파트너십, 특수목적회사(SPC) 등의 특수목적기업의 경우 연결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으나, IFRS하에서는 이들이 연결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의 지분을 50%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포함시킬 필요가 없었으나 IFRS하에서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종속회사에 포함하여야 하므로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종속회사 수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현재 이러한 기업들만을 종속회사로 가지고 있어 현행 규정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던 회사들이 IFRS도입으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될 것이다.

IV. IFRS 적용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변화

4.1 연결재무제표 공시 및 종속회사 지분율 현황

최근 IASB가 발표한 연결재무제표 기준서(IFRS 10)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은 50% 이하의 지분율을 보유한 경우 연결 여부이다. 이는 기존 K-GAAP에 따르면 30% 초과 최대주주일 경우 자회사로 인정하여 연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지주회사 요건도 자회사에 대해 상장주식 지분율 30% 초과하여 보유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므로 대부분의 지주회사들의 상장 자회사 지분율이 30% 초반 수준에 불과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IFRS 10에서는 지분율이 50% 이하이더라도 실질지배력(de facto control)이 있으면 연결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실질지배력을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¹²⁾ 회계법인간에도 실질지배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실질지배력

11) 제1조의3 (지배·종속의 관계) ①법 제1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종속의 관계"라 함은 주식회사가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다른 회사를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지배하는 경우 그 주식회사(이하 "지배회사"라 한다)와 그 다른 회사(이하 "종속회사"라 한다)의 관계를 말한다.

12) ISAB Update October 2005의 내용에서도, "심의과정에서 IASB는 IAS 27 상의 지배력 개념이

을 인정하더라도 현재의 K-GAAP보다는 상당히 높은 지분율을 갖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여러 가지 객관적인 요소(주주의 분산도, 다른 주주의 조직화 정도, 과거 주주총회 참석율 등)를 검토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IFRS 10의 발표로 인하여 실질지배력 적용시 실무적으로 변경되는 것은 없다고 판단된다. 이는 IFRS 10 발표 이전에도 IAS 27의 지배력 개념은 실질지배력을 포함하고 있고, IFRS 10에 포함된 실질지배력을 판단하는 기준 역시 과거 관행적으로 사용되었던 것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2007년 3월 15일 발표한 ‘국제회계기준 로드맵’에서는 모든 공시내용을 기존의 개별중심에서 연결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할 것을 제시하면서 연결대상 종속회사 범위를 국제회계기준과 동일하게 30% 초과 최대출자자에서 50% 초과 지분보유 또는 실질지배력기준으로 조정하였다. 단, 분·반기연결재무제표는 기업의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은 2011년에, 그리고 2조원 미만 기업은 2013년부터 작성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의 연결재무제표 공시 현황을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고 연결재무제표를 공시한 기업의 종속회사 지분율 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주)한국신용평가정보의 KIS-Value, 그리고 상장회사협의회 TS-2000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다. 국제적인 비교를 위해 영국 및 호주의 자료는 Osiris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다. 분석 시점은 국제회계기준 로드맵이 발표된 2007년말을 기준으로 하며, 표본은 금융업을 제외한 상장기업으로 한정한다. 아래 <표 3>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상장기업 중 연결재무제표를 공시하는 비율은 53.6%로 나타났다. 반면 IFRS를 이미 도입한 영국과 호주 상장기업의 연결재무제표 공시비율은 99%에 이르고 있다. IFRS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도 위 <표 2>에 제시되어 있듯이 연결재무제표 공시비율이 98%나 된다. 즉 기존 K-GAAP에 따르는 2007년 현재 우리나라의 연결재무제표 공시비율은 영미의 선진국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편이다.

<표 3> 상장기업 공시재무제표 현황

	영국(IFRS)		호주(IFRS)		한국(K-GAAP)	
연결	2,204	(99.0%)	1,712	(99.1%)	678	(53.6%)
개별	22	(1.0%)	15	(0.9%)	588	(46.4%)
합계	2,226	(100.0%)	1,727	(100.0%)	1,266	(100.0%)

<표 4>는 우리나라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는 기업들이 연결에 포함시킨 종속회사 수의 현황을 나타낸다. 기존 K-GAAP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공시하는 지배기업은

de facto control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였다(During those deliberations, the Board has made it clear that, in its view, the control concept in IAS 27 includes de facto control.)” 라고 되어 있다.

678 기업인데 이들이 거느리고 있는 종속회사들의 총수는 3,068개사이다. 따라서 연결에 포함된 종속기업의 수는 평균적으로 약 4.5개사이다. 대부분의 지배기업의 경우 연결에 포함시킨 종속회사수가 많지 않다. 종속회사가 1개사인 지배기업은 294개 기업으로 지배기업 전체의 43.4%를, 종속회사가 2개사인 지배기업은 119 기업으로서 17.6%, 종속회사가 3개사인 지배기업은 80 기업으로서 11.8%를 차지한다. 즉 전체 지배기업의 72.8%가 1개사 내지 3개사의 종속회사만을 연결재무제표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렇지만 100개사보다 많은 종속회사를 연결재무제표에 포함시킨 지배기업도 2 기업이 있다.

〈표 4〉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종속회사수

종속회사수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업수	비율
1	294	43.40%
2	119	17.60%
3	80	11.80%
4	49	7.20%
5	25	3.70%
6~10	51	7.50%
11~20	39	5.80%
21~50	13	1.90%
51~100	6	0.90%
101~	2	0.30%
합계	678	100.00%

〈표 5〉는 지배기업의 종속회사 지분율과 지배요인을 보여준다. 패널 A에 따르면,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업 678개사 중 50% 초과 지분율의 종속회사를 1개 이상 갖고 있는 지배기업은 595 기업이며, 50% 이하의 지분율인 종속회사만을 갖고 있는 지배기업은 83 기업이다. 패널 B는 50% 이하 지분율의 종속회사만을 갖고 있는 83개 지배기업의 726개의 종속회사에 대한 지배요인을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726개의 종속회사 중 지배기업이 30% 초과 지분율의 최대주주인 경우가 404개이며, 지배회사와 종속회사, 또는 종속회사와 종속회사가 합하여 30% 초과 지분율의 최대주주인 경우는 321개이다. 1개의 종속회사만이 계약 등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이사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의 구성원의 과반수를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즉 실질지배력 기준에 입각하여 종속회사로 판단된 경우에 해당한다. 즉 우리나라는 실질지배력 기준에 의한 종속회사가 별로 없다. 실질지배력기준은 기존 K-GAAP과 IFRS가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IFRS의 도입으로 실질지배력기준에 의거한 종속회사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5〉 종속회사 지분율과 지배관계

패널 A: 종속회사 지분율 현황

지분율 \ 지배·종속회사	지배기업수	종속회사수
50% 초과	5951)	2,342
50% 이하	832)	726
합계	678	3,068

- 1)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는 종속회사를 1개 이상 갖고 있는 지배기업
- 2) 지분율이 50% 이하인 종속회사만을 갖고 있는 지배기업

패널 B: 지분율 50% 이하인 종속회사만을 갖고 있는 지배기업의 지배요인

지배관계	지분율 50% 이하 종속회사
지분율이 30%를 초과하며 최대주주	404
지배회사와 종속회사, 또는 종속회사와 종속회사가 합하여 30%를 초과하며 최대주주	321
계약 등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이사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의 구성원 과반수임면권	1
합계	726

4.2 IFRS 적용과 연결재무제표 작성 비율

본 절에서는 IFRS 도입으로 인해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비율이 얼마나 증가할지를 예상해 본다. 이를 위해 2007년말 현재의 상장기업을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업과 개별재무제표 작성기업으로 구분한 후 각각의 경우 종속회사 및 관계회사의 지분율을 바탕으로 IFRS 적용 시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수가 얼마나 변동할지를 분석해 본다.

우선 2007년말 현재 기존 K-GAAP 하에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는 상장기업들 중 얼마나 많은 기업이 IFRS를 적용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의무가 있게 되는지를 분석해 본다. <표 6>에서 2007년말 현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는 지배기업은 678개 기업이다. 이 중 지분율 50% 초과와 종속회사를 1개라도 거느린 지배기업수는 595개 기업인데, 이들은 IFRS를 적용하더라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의무가 있게 된다. 나머지 83개 지배기업은 기존 연결재무제표에 지분율 50% 이하의 종속회사만을 연결시키고 있다. 이러한 종속회사들은 IFRS 적용 시 더 이상 연결대상이 아니므로 이 지배기업들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의무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 83개 지배기업들의 관계회사들을 전수 조사해 본 결과 44개의 지배기업은 50% 초과 지분율의 관계회사를 갖고 있지만 기업형태가 특수하거나(특수목적기업 등) 기업규모가 작아(자산총액 70억 미만) 이들

을 연결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IFRS 하에서는 기업형태나 규모에 관계없이 50% 초과 지분율의 관계회사는 연결대상이다. 따라서 이 83개 지배기업 중 44개는 IFRS 하에서도 계속적으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2007년말 현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는 678개의 기업 중 IFRS 적용 시 계속적으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될 기업은 39개만큼 감소되어 639개 기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6> 기존 연결재무제표 분석

(단위: 기업수)

		50% 초과	50% 이하	합계
기존	지배기업(연결F/S)	595	83	678
	종속회사	2,342	726	3,068
IFRS	지배기업(연결F/S)	639	-	639
	종속회사	3,516	-	3,516

우선 2007년말 현재 기존 K-GAAP 하에서 개별재무제표만을 작성하고 있는 상장기업들 중 얼마나 많은 기업이 IFRS를 적용할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의무가 있게 되는지를 분석해 본다. <표 7>에서 2007년말 현재 개별재무제표만을 작성하고 있는 비연결기업은 588개 기업이다. 그러나 이 비연결기업들의 관계회사들을 전수 조사해 본 결과 458개의 비연결기업은 50% 초과 지분율의 관계회사를 갖고 있지만 이들의 기업형태가 특수하거나(특수목적기업 등) 기업규모가 작아(자산총액 70억 미만, 2009년부터는 100억 미만) K-GAAP 하에서는 연결대상이 아니므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IFRS 하에서는 기업형태나 규모에 관계없이 50% 초과 지분율의 관계회사는 연결대상이다. 따라서 이 458개 비연결기업은 모두 IFRS 하에서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2007년말 현재 개별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는 588개의 비연결기업 중 IFRS 적용 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될 기업은 458개 기업이나 될 것으로 예상된다.¹³⁾

13) 본 연구는 연결기준 지분율을 50% 초과로 가정하여 향후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기업수의 변화를 예측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가정에 대해서는 실질지배력(de facto control)에 대한 향후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새로운 개념 정립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50% 미만의 지분율을 가진 기업들의 경우에도 연결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존재한다. 그러나 지분율이 아닌 실질지배력 기준으로 종속회사 여부를 입증해야 하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2009년 4월에 「연결재무제표 작성상의 지배력 판단 심포지엄」에 토론자로 나온 기업의 실무담당자는 실질지배력 개념을 적용하여 종속회사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한편 2009년 IFRS 연결기준을 적용한 기업 중 삼성전자의 경우 지분율 35.3%에 해당하는 삼성카드가 종속기업에서 빠진 대신 자산총액 100억 미만인 19개사가 연결에 포함되어 작년 기준 18개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주)LG의 경우에는 연결대상 기업이 기존 162개사에서 29개사로 대폭 줄어들었다.(연합뉴스 2010.4.27)

<표 7> 기존 개별재무제표 분석

(단위: 기업수)

		50% 초과	50% 이하	합계
기존	비연결기업 (개별F/S)	458	130	588
	관계회사	1,058	740	1,798
IFRS	비연결기업 (개별F/S→연결F/S)	458	-	458
	관계회사 (→ 종속회사)	1,058	-	1,058

<표 6>의 분석에 따르면 2007년말 현재 연결재무제표를 공시하고 있는 678개 상장기업들 중 639개 기업이 IFRS 도입 후 계속적으로 연결재무제표를 공시하게 될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표 7>에 따르면 2007년말 현재 개별재무제표만을 공시하고 있는 588개 상장기업 중 458개 기업은 연결재무제표로 공시를 전환하게 될 것으로 파악된다. 종합하면, 2007년말 현재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연결 또는 개별 재무제표 공시와 종속회사 및 관계회사의 현황에 근거하여 분석해본 결과, 총 1,266 상장기업 중 기존 K-GAAP 하에서는 678개 기업만이 연결재무제표를 공시하고 있으나, IFRS 도입 후는 그 수가 1,097 기업으로 증가하리라 예상된다. 즉 기존 K-GAAP 하에서는 상장기업 중 53.6%가 연결재무제표를 공시하고 있으나, IFRS 도입 후 연결재무제표를 공시하는 비중은 대폭 증가하여 86.7%가 되리라 예상된다.

<표 8> IFRS적용 후 예상되는 공시재무제표

(단위: 기업수)

	영국(IFRS)		호주(IFRS)		한국(K-GAAP)		한국(IFRS)	
연결	2,204	(99.0%)	1,712	(99.1%)	678	(53.6%)	1,097	(86.7%)
개별	22	(1.0%)	15	(0.9%)	588	(46.4%)	169	(13.3%)
합계	2,226	(100.0%)	1,727	(100.0%)	1,266	(100.0%)	1,266	(100.0%)

1) 639(<표 6>) + 458(<표 7>)= 1,097

VI. 요약 및 결론

개별재무제표 중심의 공시제도는 투자자로 하여금 종속회사의 잠재적 부실여부 등을 간과하도록 하는 등 재무정보의 유용성을 현저하게 약화시켜 투자자 보호에 허점을 노출할 수 있다. 따라서 선진국들의 경우 거의 모든 상장기업들이 연결재무제표를 공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IFRS 도입이 결정된 2007년말 현재 전체 상장기업의 50% 정도만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연결재무제표 공시비율은

우리보다 경제규모가 작은 다른 여러 국가들과 비교하더라도 낮은 수치이다. 이에 대해 기존의 K-GAAP 하에서 피투자회사의 규모가 작거나(자산규모 100억 미만) 특수 조직형태인 경우(특수목적기업 등) 이들을 연결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IFRS에서는 연결대상에 자산규모와 조직형태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자산 100억 미만의 기업이나 조합, SPC 등 특수형태의 기업들이 모두 연결대상 종속회사에 포함됨으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는 지배기업의 수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IFRS에서는 기본적으로 50%의 지분율이 넘어야 종속회사를 연결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반해 기존의 K-GAAP 하에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지배기업이 최대주주일 경우 지분율 30%~50%인 종속회사를 연결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따라서 기존의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업들 중 지분율 30%~50%인 종속회사만을 거느리고 있는 경우 IFRS 하에서는 더 이상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게 될 것이므로 그만큼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업 수가 줄게 된다. 특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요건으로 지주회사는 상장주식의 30% 지분을 초과하여 보유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실제로 지주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 자회사에 대한 지분이 30% 초반 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지분율 30%~50%로 최대주주의 요건을 충족하여 종속회사로 연결의 대상이 되었던 규모가 큰 계열사 상당수가 연결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 재벌기업들의 경우에는 재계서열이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 예상되고 있다.

본 연구는 IFRS 도입으로 인해 우리나라 상장기업(금융업 제외)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비율이 얼마나 증가, 감소할 지를 각 상장기업의 종속회사 및 관계회사의 지분율을 바탕으로 분석해 보았다. 2007년말 현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는 678개 상장기업 중 39개 기업은 지분율 50%가 넘는 종속회사나 관계회사를 하나도 거느리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므로 연결재무제표 작성 기업은 그만큼 감소하리라 추정된다. 반면에 2007년말 현재 기존 K-GAAP 하에서 개별재무제표만을 작성하고 있는 588개 상장기업은 중 458개의 기업은 지분율이 50% 초과되는 관계회사를 1개 이상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IFRS 도입 후 그만큼 연결재무제표 작성 기업이 증가하리라 추정된다. 종합하면, 2007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총 1,266 상장기업 중 기존 K-GAAP 하에서는 678개 기업(53.6%)만이 연결재무제표를 공시하고 있으나, IFRS 도입 후에는 그 수가 1,097 기업(86.7%)으로 대폭 증가하리라 예상된다. 즉 IFRS 도입 후 우리나라 상장기업 중 연결재무제표를 공시하는 비율은 국제적인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보여 진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IFRS 도입은 일거에 연결재무제표 공시비율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제고시킴으로써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화에 팔목할 만한 기여를 할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IFRS 도입이 단순히 새로운 회계기준의 적용으로 개별 기업의 재무제표 수치

의 변화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회계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일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IFRS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다른 여러 국가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볼 때 우리나라는 IFRS 도입으로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기업이 일시에 증가함으로 인해 해당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예상된다. 왜냐하면 연결재무제표를 새로이 작성하는 것은 개별에서 연결로의 전환이 단순한 공시전환이 아니라 종속회사를 포함한 그룹 전체의 연결시스템 구축, 회계인력 보강 및 이들에 대한 교육 등 전사적인 지원과 전반적인 경영 프로세스의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IFRS 도입으로 재무제표의 대상기업 범위와 내용이 크게 변동함으로 인한 회계시스템의 전사적인 변혁에 대해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IFRS 도입으로 인한 급격한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화는 정보이용자들에게 큰 혼란을 야기하게 될 것인 바, 정책당국은 이러한 사회적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책당국은 우리나라 연결시스템의 변화에 대해 투자자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IFRS 도입으로 인해 연결재무제표, 별도재무제표, 개별재무제표 등 여러 종류의 재무제표가 공시되게 되는데 각 재무제표의 목적이 무엇인지와 어떠한 기업에 이들이 요구되는지를 분명히 하며, 이들이 기존의 재무제표와 어떻게 비교가능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1974년 연결재무제표 제도의 도입을 시작으로 연결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화하기 위하여 연결재무제표의 공시시기 단축, 연결 분·반기 재무제표 공시 의무화 등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연결의 범위가 회계기준이 아닌 관련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특수한 경제적 상황을 반영하여 그 범위가 국제회계기준과 다른 이유 등으로 연결재무제표가 주요 공시재무제표로 정착되는 데 한계가 있어 왔다. 본 연구는 IFRS 로드맵이 발표된 시점을 기준으로 IFRS를 적용했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의 연결작성 범위가 어떻게 변동되는지를 분석하였다. 즉 본 연구는 IFRS 적용에 따른 연결범위의 변화를 인지한 기업들이 계열회사의 지분 조정 등을 통해 연결범위를 의도적으로 변경시키는 행태를 보이기 전의 자료를 이용하여 IFRS 도입으로 연결재무제표 작성비율이 얼마나 변동할 것인가를 예상해 보았다. 본 연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비율의 예측 결과는 추후 IFRS에 의거한 연결재무제표가 발표된 이후의 자료를 이용한 실제 결과와 비교해 본다면 상당히 흥미로운 것이다. 만일 실제 결과가 본 연구의 예측 결과와 상당한 차이가 난다면 이는 우리나라의 많은 상장기업들이 IFRS 도입 이후 연결실적을 유리하게 보고하기 위해 계열회사의 지분 조정 등을 통해 의도적인 연결범위 변경 행태를 보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IFRS 도입에 대비한 기업의 이러한 지배구조 변경 행태를 살펴보는 것은 후속 연구로 남겨 놓는다.

참 고 문 헌

- 국제회계기준도입준비단(2007),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
- 권성수·권수영(2006),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화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의 개선방안,” 회계저널 특별호(제15호), 55-85.
- 금융감독원 국제회계기준연구회(2008),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09.10.26), IFRS 연결재무제표 작성실무 설명회
- 김종대·신승묘·정재연(2007), “연결공시제도 도입에 따른 관련 규정 및 제도의 정비방안,” 세무와회계저널 제8권 제4호, 199-221.
-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한국회계학회·한국회계기준원(2009), 연결재무제표 작성상의 지배력 판단 심포지엄: 연결재무제표에 반영된 실질지배력
- 송인만·김문철(2005), 고급재무회계, 신영사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 전성빈(1994), 감사받은 연결재무제표의 정보효과, 회계학연구(제19호), 51-71.
- 전규연·김정원(1994), “연결재무제표의 추가적인 정보가치에 관한 연구,” 경영학연구(제23권 제3호), 83-108.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채규학·최창순(1992), 연결회계제도의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기업회계기준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 한국회계기준원 KAI포럼(2009), ED 10 '연결재무제표
- 한국회계기준원(2007), 기업회계기준서 제25호 연결재무제표
- 한국회계기준원(2008),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제1027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 한국회계기준원(2009), 회계제도 개편 관련 국제 논의동향 및 국내산업에의 영향
- 한국회계기준원(2011), IFRS 최근 개정내용 설명회.
- 황인태(1995), “연결재무제표의 유용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거래량 정보를 이용하여,” 회계학연구(제20권 제2호), 59-75.
- 황인태·강선민(2006),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화 논의와 과제,” 상장협연구(제53호 춘계호), 48-71.
- IASB Exposure Draft 10 'Consolidation'(2008.12.)
- IASB Exposure Draft 10 'Consolidation'에 대한 외부 검토의견서(2009.3.)
- IASB Exposure Draft 10 'Consolidation'에 대한 Round Table 자료(2009.7.)
- IASB, IFRS ED10,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